

강의평가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수업관리규정 제9조의 5항에 의한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강의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교수의 강의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학부 및 대학원의 모든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평가 내용) ① 평가 내용은 학습자들의 수업참여도, 강의계획 및 내용, 교수방법, 학습효과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세부평가 내용은 별표 ‘서울신학대학교 강의평가 설문지’와 같으며, 일반, 대형, 예능계, 실기과목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3., 2016.11.16.>

제4조 (평가 방법) ① 평가 방법은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한다.

② 평가 항목 외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별도의 주관식 항목을 둔다.

③ 강의평가 점수는 강좌 유형, 과목 이수구분, 수강생수 등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활용한다. <신설 2008. 9. 23.>

제5조 (평가 시기) ① 평가는 중간강의평가와 정기강의평가(학기말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중간강의평가는 중간고사 전에 실시하고, 정기강의평가는 성적이의신청 기간 중 인터넷상에서 성적열람 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6. 11. 16.]

제6조 (평가 결과의 활용) ① 평가 결과는 전산처리하여, 평가기간 완료 후 해당 교원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확인한다. <개정 2008. 9. 23.>

② 해당 교원은 강의평가의 결과를 다음 강의에 최대한 반영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교원은 정기강의평가에 대한 강의개선보고서를 전과목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2. 동일과목 차기 강의계획서에 직전학기 강의개선보고서에 따른 개선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3. 교무처는 위 1~2호에 따른 강의개선보고서 활용결과를 교과과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1. 중간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자가 후반기 강의개선에 활용한다.

2. 정기강의평가 결과는 전임교원의 승진, 승봉, 재임용에 활용한다.

3. 전임교원의 정기강의평가 결과(전체 교원에 대한 개인의 평균점수)가 2학기 연속해서 하위 5%이하일 경우 평가받은 학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업컨설팅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 평가기간 중 평가결과가 제일 낮은 강좌의 강의를 1년동안 제한한다.

4. 시간강사,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이 담당할 강좌 중 정기강의평가 결과(전체 교원에 대한 개인의 평균점수)가 하위 5%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받은 학기로부터 6개월 강의를 제한하고, 2회 이상 강의평가 결과가 하위 5%이하일 경우에는 평가받은 학기로부터 1년간 강의를 제한한다.

[전면개정2017.4.18.]

- ④ 정기강의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수강신청 시 강좌선택의 자료로 공개한다.<개정 2017.4.18.>
- ⑤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교수들에게 교내 수업컨설팅을 실시하여 교수역량강화와 수업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1. 신입교수: 1년 이내 컨설팅 의무 참석
 2. 전임교원: 정기강의평가 결과(전체 교원에 대한 개인의 평균점수)가 하위 5% 초과~10%이하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17.4.18.>

제7조 (비밀 유지 및 보관) ① 학교 당국은 강의평가지 학생들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② 강의평가 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③ 강의평가 결과는 전산서버에 저장하여 교무처에서 관리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 4. 10.>

제8조 (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지침의 폐기) 이 지침의 폐기는 교무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4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지침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